# 지 급 명 령 활 용 방 안

## **Q**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로폼의 지급명령이 완성되면, 완성된 문서를 <u>당사자 수만큼 출력하여, 제출할 첨부서류와 함께</u> 구비합니다. (예: 당사자 수가 2명인 경우 2부 출력, 즉 지급명령 신청자 1명/채권자 1명인 경우).
  - ※ 단, 서울중앙지방 법원이 아닌 경우 신청서 사본은 당사자 수보다 1~2부가 더 필요하니

#### 총 4부를 준비하여 주세요!

- 원본 1부 (첨부서류 포함) + 부본 3부 (첨부서류 제외한 신청서만)



#### 첨부서류를 꼭 준비해주세요!

지급명령신청서의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계약서, 내용증명, 사실관계 확인서, 이메일, 카톡대화 등 첨부자료를 1부 정도는 첨부하여 주세요. 대여금, 약정금의 경우 상사채권 (상업상 거래)인 경우는 이에 대한 증거자료 (예: 사업자등록증)를 첨부하여야, 법정 지연이자 6%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서에 기입된 관할법원에 방문하여 (※ 기입된 관할법원에 전화하여 사건 담당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법원 은행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먼저 납부합니다.



로폼의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입력하신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대 및 송달료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인지대, 송달료**는 독촉절차비용이라는 항목으로 지급명령 확정 후 채무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3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준비된 서류를 관합법원의 지급명령 담당부서에 제출합니다.



관할법원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전자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단,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분들은 별도로 요청주시면,

인터넷 신청방법 절차를 안내드리니 문의하여 주세요



# 지 급 명 령 활용 방안

# 지급명령 신청서 접수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 신청서 접수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이 등기편으로 송달)



약 3~5일 소요

지급명령 결정 및 채무자에게 결정 송달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일 없어 서류만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판결됩니다)

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한 경우

## 지급명령 확정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으로 강제집행에 착수 할 수 있음

법원은 채권자에게 인지, 송달료 추가로 납부하라는 보정명령 통지

→ 납부 후 민사소송 절차로 이행됨

※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번호 검색하여 사건 진행상황 확인가능



지급명령을 확정 받은 후에는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아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려 12%의 높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시되기 때문입니다. 확정 후에도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 결정문을 첨부하면 법원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 지 급 명 령 활 용 방 안

## Q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2주일 내로 한 경우, 지급명령 재판부에서는 채권자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 절차에는 소송인지대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대만 납부하기 때문에 나머지 10분의 9에 해당되는 추가 인지대를 납부해야 하며

송달료도 또한, 소송 송달료 부족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지급명령 재판부에서는 민사소송 관할 법원으로 소송기록을 넘겨주고, 이때부터는 통상의 소송절차와 같이 진행됩니다.

### Q 지급명령 신청 후, 주소 보정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주소보정 명령을 받으며 1주일내로 주소보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서 주소보정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로 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만약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민사 소송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소가 정확한데 채무자가 고의로 거부한 경우 (폐문 부재 등):

야간 특별 송달신청을 보정명령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에 배송되기에 보통 송달이 완료됩니다.

본 지급명령 활용방안 콘텐츠는 회원님이 로폼의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 출력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등 법규정과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콘텐츠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길 권고 드리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나아가 본 콘텐츠는 아미쿠스렉스㈜('로폼')의 다수의 비용과 노력을 통해 제작 된 것으로, 그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로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본 콘텐츠의 무단 복사, 변형, 배포 등을 금합니다. 하지만, 본 출처가 '로폼(LawForm)'임을 밝히고, 콘텐츠의 변형 없이 널리 배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